

#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공사감독자 배치기준(안)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39조의2 및 「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」 제8조제3항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시행할 용역에 대한 공사감독자 배치기준(안)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, 의견이 있는 경우 2026. 1. 19.(월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□ 사업 개요

- 사업 명 :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3구역 지장물 해체공사
- 위치 : 경기도 과천시 무네미골 및 막계동 일원
- 규모 : 지장물 해체공사 1식
  - ※ 193,628m<sup>2</sup>(막계동 108,333m<sup>2</sup>, 무네미골 85,295m<sup>2</sup>)
- 총공사비 : 약 3,500백만원(부가가치세 포함, 전기, 통신, 소방 제외)

## □ 공사감독자 배치기준(안)

- 사업관리방식 :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
  - ※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3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3호 의거
- 배치기준 : 「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188호, 2023. 4. 7.)」 제9조 별표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“토목비선형분야” 적용

## □ 의견 제출 기간 : 2026. 1. 12.(월) ~ 2026. 1. 19.(월) 18시까지 (7일간)

## □ 제출 방법 : 전자메일(tjpark@gcuc.or.kr) 제출(붙임 양식 참고)

## □ 제출 의견 : 공사감독자 배치기준(안)에 대한 의견

2026년 1월 12일



## 공사감독자 배치 기준

## 1. 토목비선형 분야

### 가. 투입인원수 산정기준

## 2.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배치계획표(상주 49.0인·월, 기술지원 4.3인·월)

구 분			투 입 기 간( 착 수 후 · 월)																						투입월		
			1	2	3	4	5	6	7	8	9	10	11	12	13	14	15	16	17	18	19	20	21	22	23	24	25
상 주	책 임	고 급																									25.0
	토 목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 상 주	안 전	고 급																									4.3
합 계			3																								53.3

※ 사업시행 단계별 공정표에 따라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범위내에서 기술인등급 및 투입 개월은 조정배치 가능

## [붙임]

### 공사감독자 배치기준(안)에 대한 의견

○ 성명(단체명) :
○ 주 소 :
○ 전 화 번 호 :
○ 배치기준(안)에 대한 의견

상기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6. 1. .

과천도시공사 귀하